

입 사 지 원 서 작 성 요 령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한글 워드 프로그램) 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 작성내용과 증빙서류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지원분야 : 환경으로 기재
3. 성명 · 이메일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4. 교육, 자격사항, 경력은 지원 분야와 관련 있는 경우만 작성
5. 자기소개서 작성 시 성별, 출신학교, 출생지, 가족의 직업, 기관명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직 · 간접적 기재를 금지하며, A4용지 최대 2매 이내로 작성

한국환경공단 인사지원서

1. 인적사항			
지원분야	환경	응시번호	
성 명	(한글)	전화번호	
	(한자)	전자우편	
현주소			
우대사항	☐ 온실가스관리기사 ☐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자		
	☐ 장애대상 (장애유형 : _____, 장애등급 : _____) ☐ 기타 (대상여부)		
☐ 병역(군필, 면제, 미필) : ※ 여성의 경우 면제를 선택하며, 남성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만이 지원 가능합니다.			

1. 학위사항		
졸업(예정자포함)여부	전 공 분 야	-
☐ 고등학교 ☐ 전문학사 ☐ 학사 이상	환경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4. 경력사항				
기관명	부서명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붙임 : 자기소개서 1부.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_____(인)

자기소개서[예시]

☐ 지원분야 관련 경력 / 경험 / 교육·훈련 사항

☐ 지원동기

☐ 본인 장점 및 특기사항

위 기재한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환경공단 입사지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한국환경공단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 한국환경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 · 평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채용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연락처, 근무경력, 자격증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입사지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있음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해당 ☐ 비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해당 ☐ 비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한국환경공단 신규직원 채용 서약서

성 명:

직급/생년월일/연락처:

상기 본인은 한국환경공단 채용 후보자로 등록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 합격이 취소될 수 있고, 향후 2년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자격이 박탈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재부)」에 의거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5년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채용의 응시자격이 박탈됨을 인지한다.
3.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 접속하여 개인 범죄경력이 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으며, 임용 후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4. 본인은 본 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인사청탁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덧붙임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